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즌5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100쪽

[4~9] 인문 통합

『서명』에 대한 해석과 조선 후기 신분제 개혁론

📌 지문 평가

매우 평이하다. (나)의 내용이 (가)의 내용에 기반하지만,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가)의 사상적 견해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내용을 읽어 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키워드

(가) 인문 - 동양철학 - 『서명』, 양귀산, 정이천

유학, 인(仁), 분별, 『서명』, 인성론, 신분제, 양귀산, 의(義), 겸애사상, 정이천, 이일분수, 이일, 분수, 보편 윤리, 차등 윤리

(나) 인문 - 동양철학 - 이익, 유수원

세습 신분, 직분, 퇴계, 개혁론, 이익, 사농합일, 호포제, 유수원, 사민일치

(가) 문단 1 유학의 인성론과 신분제

- 1) 전통적으로 **유학**에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에 속하는 **인(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였다.

➡ 유학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본성을 부여받는데(→ 본성이 선천적임을 뜻한다), 여기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 정의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인(仁) = 인간의 본성 = 타인에 대한 배려

- 2) 다만 이러한 인성론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신분의 상하와 귀천의 **분별**에 기초한 사회 제도가 엄격하였다.

➡ 유학에서 '인'을 강조한다면, 현실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할 텐데, 정작 실제로는 엄격한 '분별'이 강조되었다. 지향(→ '인')과 현실(→ '분별')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분별 vs 인

- 3) 이와 관련하여 송나라에서는 성리학의 토대를 닦은 **장형거**의 **『서명』**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유학의 **인성론**이 **신분제**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좁혀지는 대목이다. 유학의 인성론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데, 정작 현실의 신분제는 '분별'을 중시한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치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당시의 유학자들이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문단 2 『서명』에 대한 양귀산의 비판

- 1) 당시의 논쟁은 송나라의 학자 **양귀산**이 그의 스승인 **정이천**에게 “못 백성은 내 형제이며 만물은 내 벗이다.”라는 『서명』의 구절에 대

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양귀산은 '인'을 중시하면서도 어떤 윤리적 실천 국면에서는 친소나 원근을 분별하는 **『의(義)』**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거론하며, 장형거가 '인'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무차별적인 평등을 강조한 **목자**의 **겸애사상**으로 흘렀다고 비판하였다.

➡ 한마디로 양귀산에 따르면, 『서명』의 해당 구절은 지나치게 '인'을 강조하고 있다. 엄연히 분별(→ '의')도 중요하데, 지나치게 '인'에 쏠림에 따라 '의'가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 **주목** 이와 관련하여 '목자'의 사상이 대조적으로 주어졌음을 확인하자. 양귀산에 따르면, '인, 의'를 모두 강조한 '맹자'의 사상은 유학에 부합하지만(→ 옳지만), 무차별적인 평등을 강조한 '목자'의 사상은 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명』의 해당 구절은 맹자가 아닌 목자와 더 가깝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맹자	『서명』의 해당 구절	목자
인 + 의	인 > 의	무차별적 평등

- 2) 다양한 분별을 예법의 성립 근거로 보는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 겸애사상은 문명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 유학의 인성론은 물론 '인'을 지향하지만, 현실의 사회 제도는 '의'에 근거한다. 즉 무차별적 평등(→ 겸애사상, '인'의 지나친 강조)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가) 문단 3 『서명』에 대한 정이천의 해석

- 1) 이에 대해 **정이천**은 근본 원리인 **이(理)**는 하나이지만 나뉘어서 다름이라는 뜻의 **『이일분수(理一分殊)』**의 견지에서 『서명』을 읽도록 훈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일』**은 근본 원리가 만물을 관통하는 것이며, **『분수』**는 다양한 존재들이 그 원리를 각자 부여받는 것으로 분별이 형성되는 원인이다.

🔍 **맥락 짚기** 『서명』의 특정 구절에 대한 '양귀산'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는 그 스승인 '정이천'이 답하고 있다. 두 주장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일분수'에서 '이일'은 '이'가 하나임을(→ 하나의 근본 원리가 만물을 관통함을), '분수'는 다양한 존재들이 '이'를 각각 부여받음에 따라 분별이 성립함을 뜻한다.

❗ **주목** 다시 말해, '이일'은 '인'에 부합하고, '분수'는 '의'에 부합한다. 만물이 하나의 근본 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일') 평등한 면이 있고, 따라서 인간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표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근본 원리를 결국 각각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분수') 만물 간의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제도로써의 '신분제'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일	분수
인	의
유학의 인성론적 지향	신분제에 의한 사회 제도

- 2) 그는 분별이 없는 사회에서는 겸애에 치우쳐 '의'를 잃게 되므로 '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별을 세운 후에는 '인'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 '분별이 없는 사회'는 '인'뿐인 세상으로, '의'가 없는 세상이다. 즉 이 경우에는 '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의'만 강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 그래서 정이천은 '분수'에만 매달려 '인'을 잃게 됨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서명』의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목** '정이천'의 주장은 '인, 의'가 모두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벗

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양귀산'에 대한 답으로 연결하여 본다면[문단2-1],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명』의 해당 구절이 ‘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겸애사상으로 흐른 것이 아니다. 분별이 있는 사회이므로, ‘의’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인’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4) 아울러 그는 장황거의 사상이 ‘이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근본이 여럿이되 이들을 분별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본 묵자의 사상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 즉 어디까지나 ‘인, 의’를 모두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만을 강조하는 묵자의 겸애사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정이천’의 주장이다.

(가)문단 4 보편 윤리와 차등 윤리

‘이일분수’에 의거한 『서명』 해석은 후대 성리학자들에게 전승되어, ‘인’으로 대변되는 **보편 윤리**와 ‘의’로 대변되는 **차등 윤리**를 접목하는 근거가 되었다. 유학의 인성론을 놓지 않으면서 신분제를 정당화하려는 성리학자들은 ‘인’과 ‘의’라는 상호 보완적인 윤리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일분수’가 ‘인, 의’를 모두 강조하듯, 마찬가지로 성리학자들은 보편 윤리[→ ‘인’]와 차등 윤리[→ ‘의’]를 모두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학의 인성론과 신분제의 양립’을 설명하였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나)문단 1 조선 사회의 신분제와 직분제

1) 조선 사회는 **세습 신분**에 따라 양반, 중인, 양인, 천민으로, 직업이나 역할을 뜻하는 **직분(職分)**에 따라 사(士), 농(農), 공(工), 상(商)으로 나뉘어 있었다.

☞ 맥락 짚기 ‘신분’과 ‘직분’처럼 비슷한 개념들이 열거될 때에는 이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은 ‘세습’된다면, 직분은 ‘직업’에 해당한다.

신분	직분
양반, 중인, 양인, 천민	사, 농, 공, 상

2) 조선에서 성리학을 일으킨 **퇴계**는 그의 저술인 『성학십도』에서 ‘이일’과 ‘분수’가 공존해야 함을 피력하는 한편, 세습 신분제를 당연한 사회 질서로 인정하였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는 ‘인성론과 신분제의 양립’을 설명하기 위해 ‘인, 의’를 모두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활용된 개념이 바로 ‘이일분수’였다[(가)의 문단4]. 같은 맥락에서 ‘퇴계’도 이일분수를 내세웠으며, 사회 제도로써 ‘세습 신분제’를 정당화한 것이다.

3) 하지만 18세기 들어 천민이 늘고 양인들마저 양반 신분을 매수하자, 군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양인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허약해졌다. 그에 따라 성리학의 논리만으로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여 여러 **개혁론**이 등장하였다.

➡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이일분수’로는 세습 신분제가 정당화되지 못했다. 다만 이는 성리학 자체가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상황의 변화로 인한 문제다. ‘군역과 납세’는 양인의 몫인데, 양인의 수가 줄어들에 따라[→ 인구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천민과 양반이 늘어난다면, 양인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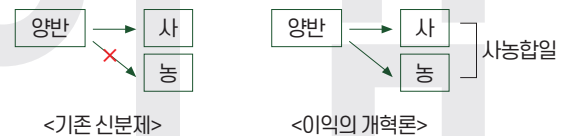
☞ 주목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이후에 어떤 ‘개혁론’들이 제시되었는지 각각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여기서 ‘세습 신분제’의 문제는 (가)의 성리학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현실의 문제이므로, 아무래도 (가)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문단 2 이익의 개혁론

1) **이익**은 양반층을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개혁론으로 ‘사’와 ‘농’을 합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제안하였다. 생산 활동의 근간이자 ‘사’를 선발하는 기본 토대를 ‘농’으로 삼고, 그 안에서 재주와 덕이 있으면 ‘사’로 승진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는 ‘농’으로 복귀시키는 등 ‘사’와 ‘농’ 간의 이동을 쉽게 하는 방안이었다.

➡ 먼저 ‘이익’의 개혁론이다. 그런데 이는 ‘신분’이 아닌 ‘직분’에 대한 개혁이다. ‘사, 농’은 직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는 계속해서 ‘사’의 역할을 하고, ‘농’은 계속해서 ‘농’의 역할을 하였다면, ‘사농합일’은 ‘사’와 ‘농’ 간의 장벽을 허무는 데에 있다. ‘농’이 ‘사’로 선발되기도 하고, 이미 선발된 ‘사’도 다시 ‘농’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주목 이는 ‘양반층을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개혁론’이다. 세습 신분이 ‘양반’인 경우에는, 그 직분에 있어서도 ‘사’에만 종사하였다. 그렇다 보니 양인이 양반의 신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에만 종사하였고[문단 1-3] 그 결과, 국가 재정이 허약해진 것이다. 그런데 ‘사농합일’이 실현된다면 양반이어도 ‘농’에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반층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2) 아울러 이익은 군포를 무조건 균등하게 물리는 **호포제**에 반대하였다.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자질에 의해 귀천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몸소 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기 힘으로 지위가 높은 ‘사’에 오른 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었다.

➡ 다만 ‘사’에 오른 이들은 어디까지나 ‘농’ 중에서 선발된, 즉 자기 힘으로 ‘사’에 오른 이들이다. 이렇게 능력과 자질에 의한 ‘귀천’을 인정하였으므로[→ ‘농’에서 ‘사’에 올 수 는 있지만, 적어도 ‘사’가 ‘농’에 비해 귀한 직분임은 인정하였으므로] ‘사’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나)문단 3 유수원의 개혁론

1) ‘농’, ‘공’, ‘상’이 천시되어 생산력이 부족해진 현실을 목도한 **유수원**은, 제대로 분화된 직분들에 백성이 고루 종사하도록 **직분제**를 강화하는 개혁론을 내세웠다.

☞ 맥락 짚기 이번에는 ‘유수원’의 개혁론이다. 앞서 이익의 개혁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익’은 양반층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제라고 보았다[문단2-1]. 즉 양인들이 양반 신분을 매수함에 따라, 양반층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 반면 ‘유수원’은 ‘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분들이 천시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직분제’를 강화하는 개혁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익	유수원
양반층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양반층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사농합일'이 필요함	'농, 공, 상'이 천시됨 ⇒ '직분제'의 강화가 필요함

2) 그는 고대 중국의 신분제의 취지가 직분제와 흡사함에도 조선에서 직분제가 쇠퇴한 것은 신분의 세습과 그에 따른 직분의 미분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을 양산하는 세습 신분제를 약화하는 것이 직분제 강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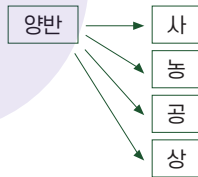
➡ 유수원에 따르면 '신분제'의 본질은 사실은 '직분제'에 가깝다. 즉 세습되는 신분제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분제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주목 보다 깊이 들어가자면, '신분제'를 강조하면, 결국 양반의 자손은 전부 양반이 된다는 점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양반층이 양산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분이 '세습'되지 않을 필요가 있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 농, 공, 상' 중 하나에 종사하는 '직분제'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직분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사민일치(四民一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타고난 신분이나 국가의 권장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학식에 따라 직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을 말한다.

➡ '사민일치'는 유수원의 개혁론의 핵심 개념이다. 세습되는 신분이나 '개인의 능력과 학식'에 따라 '스스로' 직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주목 중요한 것은 '농, 공, 상'을 천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가 평등해 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반도 '사'가 아닌 '농, 공, 상'에 언제든지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익'이 문제 삼은 양반층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된다. 오히려 '이익'의 경우 양반이 '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유수원'의 경우 '농, 공, 상'에 모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더 타당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유수원은 어느 직분이든 국부 증강에 기여하므로 천한 것은 없으며, 자손들이 직분 선택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직분에 따라 역할과 위계가 다르므로 '사'에게 군역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여겼다.

➡ 이렇듯 '유수원'은 기본적으로 각 직분이 평등하다고 보았지만, 다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에 한해서 일정한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보았다.

※ 주목 여기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두 관점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	유수원
핵심 개념	사농합일	사민일치
문제 원인	양반층의 생산 활동 참여 ×	'농, 공, 상'의 천시
직분 간 귀천 차이	○	×
'사'에게 혜택	○	○

(나) 문단 4 의의

이렇듯 조선 후기 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은 현실의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리학적 신

분 질서에서 벗어나 능력 본위의 사회를 지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무난한 마무리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ㄱ. 무릇 '체(體)'라고 하면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용(用)'은 사물로 드러난 실제 쓰임이다. '용'은 '체'가 흐르고 움직이는 것이며 '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체'와 '용'은 비록 두 글자이지만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

※ 맥락 읽기 ㄱ~ㄷ 각각은 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 이런 유형의 경우 ㄱ을 읽고 ㄱ에 대한 선지들을 판단하고, ㄴ을 읽고 ㄴ에 대한 선지들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ㄷ을 읽고 ㄷ에 대한 선지들을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ㄱ~ㄷ이 각각 지문의 어떤 설명에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 ㄱ의 경우 '체'가 모든 사물을 관통하는 근본이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실제 쓰임은 '용'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는 하나임을 뜻하는 '이일'과, 그 원리를 다양한 사물들이 각각 부여받음을 뜻하는 '분수'에 각각 대응된다(ㄱ의 문단3~4). '이일분수'는 이일과 분수를 모두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체'와 '용'이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2) ㄴ.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은 세습 양반에 대한 군역 면제와 세습 노비의 증가에 있다. 그러니 시험으로 선발되는 직분인 '사'에 한해서만 군역을 면제해야 할 것이며, '종모법'을 시행하여 친민 아버지와 양인 어머니 사이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ㄴ의 경우 국가 재정의 불안정과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양반층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천민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즉 ㄴ은 조선 후기에 제기된 '개혁론'과 관련이 있다(ㄴ의 문단1).

※ 주목 ㄴ은 모든 '양반'이 아닌 시험으로 선발된 자(→ '사')에 한하여 군역을 면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신분'이 아닌 '직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수원'의 개혁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ㄴ의 문단3).

∴ 다만 유수원은 어디까지나 직분 간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고 보았다(ㄴ의 문단3~4). '사'에게 군역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역할과 위계 때문이지, 귀천 때문은 아니었다. 따라서 ㉓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3) ㄷ. 땅으로 말하자면 내외와 원근의 형세가 있고, 지위로 말하자면 준비와 상하의 계급이 있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혜로움과 아둔함의 차이가 있다. 만약 땅에 허다한 형세가 없다면 만물을 용납하여 실을 수 없듯이 지위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 ㄷ의 경우 한마디로 '귀천'을 나누는 것이, 즉 '분별'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ㄷ)에서는 '퇴계, 이익'이 이러한 맥락에서 귀천의 존재를 긍정하였다(ㄴ의 문단1~2, 문단2~2).

유전 알고리즘의 예시

— 지문 평가

‘유전 알고리즘’의 과정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 상황을 예시로 삼아 설명하고 있는 매우 평이한 글이다. 편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계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평가원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 키워드

과학 - 생리학 - 일주 리듬

최적해, 유전 알고리즘, 염색체, 해, 적합도 함수, 필수 발전량, 월간 발전량, 유전자, 예비 발전량, 변이, 적합도, 해 집단, 부모, 자식, 교배, 진화 전략 알고리즘

문단 1 유전 알고리즘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는 대개 다양한 해를 가지는데, 생물의 진화를 모방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해인 **최적해**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유전 알고리즘**이라 한다. 이 방법에서는 해의 후보들을 특정 형태의 자료로 나타내어 **염색체**라 칭한다. 그리고 여러 연산을 적용하여 다양한 염색체들을 확보한 후 해에 속하는지를 평가하고, **적합도 함수**를 적용하여 최적해를 찾으면 작업을 종료한다.

▶ **맥락 짚기** 비교적 짧은 글에서는 특히 첫 문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글과 같이 글의 초점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글의 독해에 필요한 여러 개념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유전 알고리즘’과 관련된 ‘최적해, 염색체, 적합도 함수’를 제시하면서, 유전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과정을 미리 선언하고 있다.

- 최적해 : 비교적 만족스러운 해
- 유전 알고리즘 : 최적해를 빠르게 찾는 방법
- 염색체 : 해의 후보
- 적합도 함수 : 해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최적해를 찾는 함수

▶ ‘유전 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염색체들을 확보해 둔다.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해의 ‘후보’이므로, 그것이 실제로 해에 속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어떤 염색체는 해에 속하지만, 또 어떤 염색체는 해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염색체들 중에서 실제로 해에 속하는 것들만을 남기면, 이들에 ‘적합도 함수’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해를 찾게 되면, 유전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다양한 염색체 확보 ⇨ 해에 속하는지를 평가 ⇨ 적합도 함수 적용

▶ **참고** 최적해는 가능한 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해가 아니라, ‘비교적 만족스러운 해’이다. 아주 복잡한 문제의 상황에서는 가장 우수한 해를 찾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은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해를 최적해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해가 발견될 때 작업을 종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전 알고리즘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쓸 만한 해를 찾는 방법이다.

문단 2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

1) 3대의 발전기를 갖춘 발전소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필수 발전량** 이상을 확보하되 발전기별로 1개월 이상 가동을 멈추고 정비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정비 일정**[→ **최적해**]을 찾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필수 발전량은 1월이 20, 2월이 30, 3월이 20, 4월이 10이며, 발전기별 **월간 발전량**은 1호기가 30, 2호기와 3호기는 각 20이다.

▶ **맥락 짚기**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주어졌다. 즉 ‘최적의 정비 일정’을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찾는 것이 목적이다. 차근차근 정리해 두고, 앞으로 독해 과정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1월	2월	3월	4월
	20	30	20	10
1호기				
30				
2호기				
20				
3호기				
20				

2) 월별 가동 여부를 이진법으로 표기되는 **유전자**로 삼아, 가동할 때 1로, 가동하지 않을 때 0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월간 4자리 수를 묶어 ‘1110 1110 1110’과 같은 임의의 자료를 염색체로 삼는다.

▶ **염색체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다.** ‘1110’을 구성하는 각각의 0과 1[→ 이진법으로 표기]은 ‘유전자’에 해당하는데, 염색체의 형태는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인 것이다. 즉 ‘1110 1110 1110’은 1, 2, 3호기는 모두 1, 2, 3월에는 가동하고 4월에는 가동하지 않는 일정을 의미한다.

문단 3 변이

1) 월간 발전량에서 필수 발전량을 뺀 값을 **예비 발전량**이라 할 때, ‘1110 1110 1110’은 4월의 예비 발전량이 -10이어서 **해가 될 수 없다**.

▶ **맥락 짚기** 수식이 주어졌으니, 일단 정리하자.

$$\text{예비 발전량} = \text{월간 발전량} - \text{필수 발전량}$$

▶ ‘1110 1110 1110’ 염색체의 경우 4월에는 1, 2, 3호기 모두 가동하지 않으므로, ‘월간 발전량’은 0인데, 4월 ‘필수 발전량’은 10이어서 4월 예비 발전량은 -10이 된다.

	1월	2월	3월	4월
	20	30	20	10
1호기				
30	1	1	1	0
2호기				
20	1	1	1	0
3호기				
20	1	1	1	0
월간 발전량	70	70	70	0
예비 발전량	50	40	50	-10

▶ **주목** 문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의식하자. 이렇게 구한 염색체는 어디까지나 후보이므로, 그 자체가 ‘해’에 속하지는 않는다. 즉 이것이 해에 속하는

지는 따져 봐야 한다[문단]. 이 문제에서는 어떤 달의 '예비 발전량'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해'가 될 수 없다. 최소한 '필수 발전량'만큼 발전이 매달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당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럴 때에는 변이를 시도한다. [변이]는 임의의 자리를 골라 값을 바꾸는 연산이다. 총 12자리 중 5번과 8번 자리 각각에 변이가 일어나 '1110 0111 1110'을 얻었다고 하자. 이 염색체의 월간 발전량은 '50, 70, 70, 20'이고 예비 발전량은 '30, 40, 50, 10'이므로 해가 된다.

▶ '해'가 될 수 없는 염색체를 버리지는 않는다. 해당 염색체를 '변이'를 통해, 해가 될 수 있는 염색체로 만드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가령 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염색체 '1110 0111 1110'은 모든 달의 '예비 발전량'이 양의 값이므로 해가 된다.

	1월	2월	3월	4월
	20	30	20	10
1호기	1	1	1	0
30				
2호기	0	1	1	1
20				
3호기	1	1	1	0
20				
월간 발전량	50	70	70	20
예비 발전량	30	40	50	10

- 3) [적합도 함수]를 4개월간 예비 발전량의 합으로 정의할 때, 이 해의 [적합도]는 130이다.

▶▶ 주목 다시 문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인식하자. '1110 0111 1110'처럼 해에 속하는 것들을 파악했다면, '적합도 함수'를 적용하여 최적해를 찾게 된다 [문단]. 즉 '적합도'를 기준으로 이 해가 최적해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발전량'이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 참고 실제로 적합도가 몇 이상일 때에 최적해로 간주한다는 식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적합도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최적해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단 4 교배

- 1) 이렇게 변이를 거쳐 만든 해들로 하나의 세대인 [해 집단]을 구성한다.
▶ 앞선 과정에 대한 요약이다. 먼저 '1110 1110 1110'과 같은 염색체들은 '임의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예비 발전량'이 음의 값인 달이 포함된 염색체는 해가 되지 못하는데, 이들은 '변이'를 거쳐 해에 속하게 된다[문단3].
▶ 그렇게 만들어진 해들을 묶어서 '해 집단'이라고 칭한다. 이들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유전 알고리즘이 '생물의 진화'를 모방했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겠다.
- 2) 예컨대 '0101 1110 1101'도 첫 세대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해 집단에서 두 해를 [부모]로 선택하여 교배를 거쳐 하나의 [자식]을 만든다. [교배]는 자릿수별로 부모가 가진 두 값 중 하나만을 가져오는 연산이다. '1110 0111 1110'과 '0101 1110 1101'을 교배하면 1번 자리는 0과 1 중 하나가 선택되고, 2번 자리는 1들에서 선택되므로 1이 되는 것이다.
▶ 하나의 '해 집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교배'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예컨대 3번 자리는 1과 0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다.
- 3) 다만 교배 과정에서 낮은 확률로 해당 자리에 [변이]가 일어나도록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나쁜 해에도 우수한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

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해들이 그 다음 세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교배의 과정에서 '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 가령 2의 예시에서 2번 자리에는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0'으로 변이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주목 이렇게 변이를 거치는 이유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해들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2의 예시에서 2번 자리에 0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다양한 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 4)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해를 얻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 '한 세대'에서 두 부모를 선택하여, 교배와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변이까지 진행하면, 하나의 자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식은 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해 집단에 속하게 된다.
▶ 따라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수록 해 집단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면서 '적합도 함수'를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적합도가 충분히 높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인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

문단 5 진화 전략 알고리즘

복잡하지 않아서 빠르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면, 유전 알고리즘과 흡사한 [진화 전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하나의 부모에 하나의 자식이 나오는 방법으로, 최적해가 나올 때까지 교배 없이 변이만을 적용한다.

▶▶ 백략 짚기 '유전 알고리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진화 전략 알고리즘'이 주어졌다. 두 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파악하면 된다. '진화 전략 알고리즘'의 경우 '두' 부모에 하나의 자식이 나오는 '교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단순하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서 빠르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	진화 전략 알고리즘
교배, 변이	변이

<보기> 분석

<보기> 문단

발전소에서 3대의 발전기들에 대한 최적의 정비 일정을 찾는, 동일한 상황의 문제를 마주한 후 첫 번째 해 집단을 구성했다. 다음의 ㉔와 ㉕는 모두 [변이]들을 거쳐 만들어진 후 첫 번째 해 집단에 속해 있던 것으로, [교배]를 위해 부모로 선택된 두 개의 해이다. (단, 적합도 함수를 통해 얻은 적합도가 클수록 우수한 해라고 간주한다.)

㉔ 0111 1110 1101

㉕ 1011 0110 1110

▶▶ 백략 짚기 지문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 ㉔, ㉕는 모두 변이를 거쳐, '해 집단'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즉 해의 후보 [염색체] 정도가 아니라, 해에 속하는 것들이다[문단3-2]. 예비 발전량이 음의 값인 달이 포함되지 않는 가동 일정인 것이다.

➡ 먼저 ㉔의 적합도는 1300이다.

	1월	2월	3월	4월
	20	30	20	10
1호기	0	1	1	1
30				
2호기	1	1	1	0
20				
3호기	1	1	0	1
20				
월간발전량	40	70	50	50
예비발전량	20	40	30	40

➡ ㉔의 적합도는 1100이다. 즉 ㉔는 ㉔에 비해 적합도가 높으므로, 더 우수한 해
[→ 더 최적해에 가까운 해]에 해당한다.

	1월	2월	3월	4월
	20	30	20	10
1호기	1	0	1	1
30				
2호기	0	1	1	0
20				
3호기	1	1	1	0
20				
월간발전량	50	40	70	30
예비발전량	30	10	50	20

➡ 이 둘은 부모로 선택되었으므로, '교배'가 이루어진다. 가령 1번 자리는 0과 1 중 하나가 선택되고, 3번 자리는 1들에서 선택되는 식으로 하나의 자식이만
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식'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해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문단4-3].

0	1	1	1	1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1	0
		1	1		1	1	0	1	1		

∴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 교배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 '변이'가 일어
날 수 있다[문단4-3]. '교배'만 이루어진다면 3번 자리는 1로 확정
되겠지만, 변이에 의해 0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4~17] 사회

헌법 소원 심판

지문 평가

정보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확하게 읽어 내야 하는 대목들이 많다. 지
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대별되는데, 문단3까지는 '헌법 소원 심판'이 과연 어떤
인가를 따진다면, 그 이후부터는 '헌법 소원 심판의 기속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따진다. 각 대목에서 무엇에 대해 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
다면 글을 읽는 내내 헤매기 쉬웠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 - 법학 - 헌법 소원, 한정 위헌 결정

헌법 소원,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자, 보충성의
원칙, 합헌론자, 헌법 제111조 제1항, 위헌 법률 심판, 단순 위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 기속력, 헌법 재판소, 대법원, 법조계, 2022년 헌법 재판소, 1997년
헌법 재판소

문단 1 헌법 소원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
민이 그 구제를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 역시 국가 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 소원의 청구 사유를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론과 합헌론이 대립하고 있다.

➡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원의 재판'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법원의 재판'도 당연히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어
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반대하는 관점
[→ 위헌론자]과 찬성하는 관점[→ 합헌론자]이 충돌하고 있다.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면서, 각자가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
건이다.

문단 2 위헌론과 합헌론

1) **위헌론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해당 조항에 덧붙여
져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경유한 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았다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하급 법원의 판결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통해서도 구제되지 않은 경우조차 헌법 소원 심판의 청
구를 금지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 '위헌론자'의 주장이다. 침해된 기본권이 구체되지 않았다면, 그에 한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주목 '위헌론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 소원 심판을 보충적 수단으로서 활용할 길을 박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가령 '하급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곧바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이들이 옹호하지는 않는다. 아직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등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여기서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는 점도 챙겨 두자. 이렇게 'A인 B'와 같은 식으로 개념 B의 설명이 주어지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놓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즉 '위헌론자'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했는지가 중요하다.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경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 ⇨ ⇨ 대법원의 판결 ⇨ 헌법 소원 심판

2) 이와 달리 합헌론자들은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헌법 조항은 헌법 소원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헌법 소원의 본질과 무관하게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이번에는 '합헌론자'의 주장이다. '위헌론자'의 주장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장점이다.

▶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근거가 '헌법 제111조 제1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애초에 '헌법 소원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도록, 즉 '입법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도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론자	합헌론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충성의 원칙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

문단 3 한정 위헌 결정

1) 1997년에 헌법 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 자체나 그 일부 내용이 위헌임을 선언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한정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되 특정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만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앞선 찬반 논쟁의 연장에서 이해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과연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를 '1997년 헌법 재판소'에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 맥락 짚기 '단순 위헌 결정'과 '한정 위헌 결정'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같은 층위의 개념이 열거되어 있다면, 이들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읽어 내려야 한다.

단순 위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
법률 자체나 그 일부 내용이 위헌임을 선언, 그 효력을 즉시 정지	특정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만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 법률의 효력 유지

▶ '단순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지만, '한정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1997년 헌법 재판소'는 어떤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는지를 파악해야겠다.

2) 당시 헌법 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속한다는 해석에 한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한정 위헌 결정인 만큼,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주목 즉,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라면, 그 재판에 한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1997년 헌법 재판소'의 취지다. 위헌론자와 합헌론자의 관점을 나뉘 절충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단 4 위헌 결정의 기속력 논쟁

이러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헌법 재판소에 의한 심판이 법원을 구속하는 힘인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본래 단순 위헌 결정이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는 사실에는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의견이 일치하지만, 한정 위헌 결정 역시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문단3까지는 특정 법률(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쟁이었다면, 여기서는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 재판소에 의한 심판'이 과연 기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 주목 다만 '단순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그 기속력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 위헌 결정'이다.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두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5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

1) 헌법 재판소는 한정 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판에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원의 해당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순 위헌 결정이든, 한정 위헌 결정이든,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

※※ 주목 여기서 기속력, 즉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재판소에 의한 심판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히는, 위헌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문단3].

◎◎ 참고 앞선 설명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문단3-2]. 그 오해를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서 '그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그 판결 자체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97년 한정 위헌 결정을 근거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판결
- 해당 판결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음

2) 이에 반해 **대법원**은 1996년에 한정 위헌 결정의 경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법률은 효력을 유지한 채 존속되므로, 한정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률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의 해석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에 전속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 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 맥락 짚기 앞서 '헌법 재판소'의 입장과 구분하여 이해하자.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헌법 재판소	대법원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 ⇒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할 수 없음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 부정 ⇒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할 수 있음

3) …… 헌법 소원 심판에 의해 해당 판결이 무효화되어도 법원은 그에 기속되지 않는다.

※ 주목 여기서 '해당 판결'은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 뜻한다. 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문단3-2]}. 그리고 헌법 소원 심판에 의해 그 판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헌법 소원 심판에 의한 효과는 여기서 처음 기술되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 설명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에 기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단 6 마무리

2022년에 헌법 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내용에 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정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는 혼란이 여전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022년 헌법 재판소'는 '1997년 헌법 재판소'와 달리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항의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모두 '기속력'을 인정할 것이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즉시 정지되며 [문단3-1]}.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앞선 문단4의 논쟁을 해소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 주목 왜 그런지도 생각해 보자. 어떤 법률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모두 '기속력'을 인정한다. 즉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재판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문제는 '한정

위헌 결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문단5-2]}. 해당 법률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볼 테고, 그것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전히 '한정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는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으므로 혼란이 여전하다고 본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2023년에 갑이 사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는 법률 A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갑에게 과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갑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행정 **법원**은 법률 A에 대한 세무서의 해석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이렇게 패소한 갑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후 다음의 ㉠~㉣가 순서대로 일어났다.

㉠ 갑은 법률 A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이를 청구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법률 A에 대한 세무서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은 갑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배척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갑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 재판소는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 맥락 짚기 ㉠~㉤를 하나씩, 지문의 설명과 적절하게 대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2023년에 유의하자. '2022년 헌법 재판소' 이후이므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에서는 갑의 청구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 A는 여전히 합헌이되, '법률 A에 대한 세무서의 해석'에 한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대문단3-1]}.

➡ ㉢가 '대법원'의 판결임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문단5-2]}. 따라서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여전히 법률 A에 대한 세무서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에서 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모든 구제 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함에 따라,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듯 갑의 청구는 '기본권 침해' 때문으로 봐야 한다 [문단1]. 가령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의 입장은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그 자체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문단5-1]}.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즉 관건은 해당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에 있지,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가에 있지 않다. 따라서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에서 '헌법 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와 같은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다[문단5-1]}. ㉡의 판결은 따라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며, 따라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결정도 내려질 수 있다.

[22~26] 현대시

(가) 「자아곡」

— 이육사 —

작품 평가

‘자아’는 자정 무렵의 시간을 뜻하므로, ‘자아곡’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암울한 시대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캄캄한 한밤중의 시간을 통해 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 1연 황폐해진 고향을 떠올림

수만 호 빛[→ 변성]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 쇠락, 절망]만 푸르러라

▶ 바람직한 고향의 모습과 황폐한 고향의 현실이 대비되고 있다. ‘무덤’이 환기하는 죽음의 이미지와 ‘이끼’가 환기하는 어둡고 축축한 그들의 이미지를 통해 황폐하게 버려진 고향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제 2연 암울한 현실을 생각함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 담배 파이프]엔 조용히 타고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 화자는 고향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고향과 현실에 대한 상념에 젖어 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인한 암울한 상황 또는 어두운 전망만이 지배적인 현실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연 상념에 젖어 눈물을 흘림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 ‘연기’가 ‘항구’에 든다고 함으로써, 담배 연기의 시각적 움직임과 결부해 항구를 향하여 화자의 상념이 펼쳐져 나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시인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타국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돛대’와 ‘항구’는 화자가 객지를 떠도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옛날의 들창[= 들어서 여는 창]마다 눈동자엔 짙은 소금이 저려

▶ 고향의 집들과 집들의 들창이 떠오르자 화자는 눈물을 흘린다. ‘항구’는 바다를 떠올리게 하고 그 바닷물에서 연상되는 ‘짙은 소금’을 ‘눈동자’와 결부함으로써 눈물의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제 4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감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 바람과 눈보라가 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것은, 무덤 같이 변해 버린 고향을 떠올리노라면 시련과 고난 없이 사는 오히려 건디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겠다는, 나아가 스스로 안온한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 울분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걸어가는 그림자와 발자취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진다. 미각[→ 매운 술], 시각[→ 그림자], 청각[→ 발자취 소리]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는 건디기 힘든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 5연 심적 고통 속에서 각오를 다짐

숨 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냐[→ 설의적 표현]

▶ 숨이 막힐 듯한 심적 고통 속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 줄 ‘강물’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강’이 역사의 흐름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적 답답함이 아닌 암울한 역사로 인한 울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느라

▶ ‘강’이 역사를 상징한다면, ‘달’은 암울한 역사를 밝혀 주는 희망의 이미지, 암울한 시대를 밝히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환기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차디찬 강’은 시련에 처한 역사를, 그것을 마음에 들이겠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6연 황폐해진 고향을 떠올림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 수미상관, 즉 제1연의 반복이다.

[27~30] 고전시가

(가) 「벼슬을 저마다 하면~」

— 김창업 —

수록 지문 평가

명문가 출신의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벼슬에 나아가기를 마다하고 은거했던 작가의 작품이다. 은거하는 삶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혼란했던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체념의 정서도 엿볼 수 있다.

벼슬을 저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하면 농부(農夫) 할 이 뉘 있으며

▶ 벼슬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벼슬하면 농부 할 사람이 누가 남겠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초장은 사람의 삶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사람이다 벼슬을 하려고만 들면 농부 할 사람이 누가 남겠느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초장은 세상에는 벼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농부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의원(醫員)이 병 고치면 북망산(北望山, 무덤이 많은 곳을 이르는 말)이 저러하라

▶ 의원은 병을 고치려 하고 사람들은 의원이 병을 고쳐 주기 바라지만, 그걸 뜻대로 된다면 북망산에 무덤이 저러 많겠느냐는 것이다. 원한다고 모두가 벼슬을 할 수는 없다는 초장과, 죽음을 어찌할 수는 없다는 중장을 대구 형식으로 병치하여, 인생살이가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희야 잔(盞) 가득 부어라 내 뜻대로 하리라

▶ 초장과 중장은 인생에 대한 체념, 또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중장은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잔의 술을 통해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